

2021년 국회 8급 행정학 (2021.4.24.)

• 해설 : 이승철

* 출제자는 아마도 수험생을 엿먹일 생각에 희열을 느꼈던 분일 수 있음.

* 정답 가안에 따른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어 확정 정답은 변경 가능성 있음.

01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견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효력을 가진다.
- ②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액의 2/3를 감한다.
- ③ 강등은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④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3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 ⑤ 파면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해설

- ②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액의 1/3를 감한다.

답 ②

☞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

경징계	견책 (譴責)	•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공식적 징계절차에 의하고 인사기록에 남음. • 가장 가벼운 징계이며 사용빈도가 높음.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교정 징계
	감봉 (減俸)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3을 감함(2/3 지급). •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중징계	정직 (停職)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배제 징계 (공무원 신분 상실)
	강등 (降等)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1~3개월간x)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 •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는 강등 적용 안 함.	
	해임 (解任)	•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 3년간 공직 취임 제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에 영향 없음. • 단,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1/4을, 5년 미만인 자는 1/8을 감액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1/4을 감액 지급.	
	파면 (罷免)	•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 5년간 공직 취임 제한, 퇴직급여는 감액 지급. •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1/2을, 5년 미만인 자는 1/4을 감액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1/2을 감액 지급.	

■ 감봉·정직·강등 구별

구분	보수 및 직무 종사			승진임용·승급 제한	기타
감봉	1~3개월	보수 1/3 감함	직무에 종사 가능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부터 12개월 간	·
정직	1~3개월	보수 전액 감함	직무에 종사 못함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부터 18개월 간	·
강등	3개월				1계급 아래로 직급 내림

☞ [관련기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14 국회9급(수정)

- ①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감봉기간 동안 보수액의 3분의 1이 감해진다.
- ②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 ③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 ④ 견책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 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답 ⑤

☞ [관련기출]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회9급

- ①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 ②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에 포함된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④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한다.
- ⑤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답 ④

[관련기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행정사

- 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답 ②

02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부세의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포함된다.
- ②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다.
- ③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020년 100의 40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④ 특별교부세는 그 교부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통합·일원화되었다.
- ⑤ 국고보조금은 지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해설

① (△) 법률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보면 틀린 내용이지만 다른 지문이 모두 확실히 틀리므로 ①을 답으로 본다.

① '교부세'의 재원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표기해야 한다(지방교부세법은 미리 지방교부세를 '교부세'로 표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교부세'로만 표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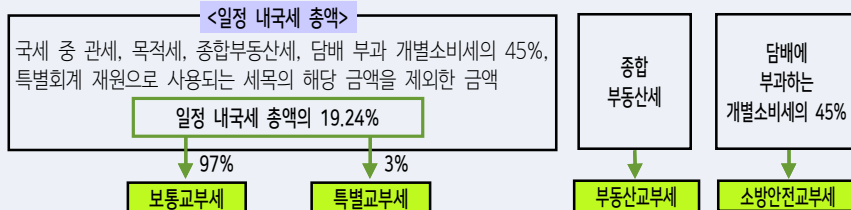
•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②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아니라 내국세 중 일정 금액(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 총액의 19.24%라고 해야 옳다.

•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 (이하 4~6호 생략)

❗ 지방교부세의 재원



- ② (×) 지방교부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2015년 1월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이다.
- ③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종전 담배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이었으나 2020년 4월 1일부터 100의 45로 증가시켰으며, 증가된 부분(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였다.
- ④ (×) 특별교부세는 교부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⑤ (×) 국고보조금은 지정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다.

답 ①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구 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재원	일정 내국세의 19.24%(일반회계),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45%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용도	기본 행정수요 경비에 충당	국가시책 및 정책적 고려(구체적 보조 목적 사업 경비)
용도의 제한	제한 없음(일반재원) *단,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는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성 많음	용도 제한 엄격(특정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성이 거의 없음(국가의 통제)
기능	재정의 형평화 기능 / 수직·수평적 재정조정	자원배분 기능 / 수직적 재정조정
지방비 부담	없음(정액 보조)	있음(대부분 정률 보조) -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03 다음 사례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은?

지방정부 A시는 최근 일정 나이의 청년들에게 월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청년소득 정책을 실시하였다. 청년소득 지급이 청년들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년소득 정책 실시 전후 대상자들의 고용현황을 측정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를 청년소득의 효과라고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경기불황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① 호손효과 ② 검사요인 ③ 역사적 요인 ④ 회귀인공요인 ⑤ 오염효과

해설

• 원인변수(정책변수) : 청년소득정책

• 결과변수(정책효과) : 청소년고용

• 제3의 변수 : 정책실시 전후 측정시점 사이에 경기불황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여 결과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도를 저해하는 요인(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으로서 역사(사건)요인에 해당한다.

■ 역사(history ; 사건)요인 : 사전(실시 전)검사와 사후(실시 후)검사 기간 동안 연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연구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사건의 발생(조사기간 중에 정치·경제·사회 및 자연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조사기간이 길수록 사건의 개입가능성은 커짐(예) 수질정화장치 설치와 수질개선의 관계 측정시 중간에 폭우가 내려 오염요소가 제거된 경우, 도로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체증 개선의 관계 측정시 중간에 지하철 개통이나 유가 상승 발생. 공장폐수정화시설 설치정책을 1년 간 실시 후 강물 오염도 측정시, 극심한 경기침체로 공장 폐업이 증가하여 오염이 감소한 경우).

답 ③

[관련기출] 다음 <보기>의 사례는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2005 국회8급

정부에서 전국 도로에 무인속도감지기를 설치한 직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감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 평가 과정에서, 바로 같은 시기에 세계적 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 보호 성능이 현격히 개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① 우발적 사건 또는 역사성(history) ②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 ③ 성숙 효과(maturation)
④ 통계적 회귀(regression artifact) ⑤ 실험 중 탈락 혹은 소멸(experimental mortality)

답 ①

[관련기출]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2016 국가9급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① 상실요인(mortality)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답 ③

04 정부 예산에 대한 이론 중 다중합리성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 예산 혹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성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관료들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
- 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이후 합리적 균형을 지속하게 된다.
- 예산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
- 예산 결정은 전체적인 혹은 종합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일정 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 관료를 공익을 대변하는 합리적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합리성을 따르는 경제적 주체로 본다.

해설

① 다중합리성모형(Multiple Rationalities Theory),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③ 합리주의 모형, ④ 점증주의 모형, 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답 ①

【관련기출】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7급(상)

- ① 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 ②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 ③ 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 ④ 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설

- ② (×)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는 구유통 정치(Pork-barrel politics)와 관련된다. 니스카넨(W. Niskanen)의 관료이익(예산)극대화 가설(budget maximization)은 관료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부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적정수준의 산출량보다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게 되어 정부지출이 확대된다는 이론이다.
- ③ (×) 다중합리성 모형은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예산을 결정하는 중앙예산기구나 관료들(의회 의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 ④ (×) 단절균형이론은 사후적 분석으로는 적절하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므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답 ①

❖ 최근 예산결정이론

점증주의와 총체주의는 세출에 초점을 두고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예산결정의 문제를 접근하여 왔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와 경제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또한 1970년대 후반 이후 자원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적 예산결정이 제도화되면서 전통적 예산결정 이론들의 규범성과 현실 설명력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정치와 경제의 상관성에 관심을 두고 거시적 변수 내에서 미시적 예산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들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1.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 ① 신고전경제학파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제적·이기적 개인을 가정하고 이들이 어떤 유인체계 하에서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
- ②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연역적인 논리전개를 특징으로 하며 주요 이론은 정부의 크기와 크기의 증가에 관한 이론(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모형), 관료의 지대추구 및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료제의 재량권 통제에 관한 이론, 예산의 크기에 관한 중위투표자이론. 관료제의 지대추구 및 재량권 통제 이론들의 공통된 가정은 주인 대리인 관계의 존재(주인·대리인 이론은 계약관계 속에서 주인이 다른 행위자인 대리인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에 맞도록 통제하고 계약을 설계하는 최적의 방법을 설명).

2. 다중합리성이론(Multiple Rationalities Theory) - 서메이어(K. Thur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

- ① 예산을 결정하는 결정자 또는 조직은 다양한 합리성을 내포하고 다양한 합리성에 근거한 목적들을 추구하여 예산에 관련된 결정을 한다는 이론(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Rubins의 실시간예산운영모형을 통합). 기존 예산결정이론이 완전한 합리성(full rationality)과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중 어느 것이 더 설명력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예산결정자와 예산결정기관 내에 다중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봄(예산결정과정이 가진 복잡성을 이론으로 포섭).
- ② 중앙예산기구는 반대자(adversary), 통로(conduit), 촉진자(facilitator), 정책분석가(policy analyst), 지지자(advocate)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효과성 측면에서 정치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을,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 예산결정자의 의사결정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결정으로 구성됨.
- ③ 다중합리성이론은 조직 내에 다양한 합리성이 공존하며 특정 유형의 합리성만이 유일하게 조직의 의사결정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다중기준의사결정이론, 다중합리성조직이론, 관료제재량권이론과 같은 맥락.

3.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 바움가트너(F. Baumgartner)와 존스(B. Jones)

- ① 정책변화나 예산변화에 있어서 빈번한 소폭적 변화와 간헐적인 대폭적 변화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기존의 점증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급격한 변화를 포함한 이론으로 정책이나 예산은 균형상태(equilibrium)가 지속되다가 단절적인 변화(punctuation)가 발생하고 다시 균형상태가 지속된다는 이론. 단절은 대폭적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때 존재하고, 균형은 소폭적 변화가 주로 발생할 때 존재하며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는 이유와 단절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
- ② 정책변화나 예산변화가 대부분 점증적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비점증적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비점증적 변화는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우선순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예산이론이나 정책이론에 있어서 점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이론.
- ③ 단절균형은 진화생물학, 역사적 제도주의의 개념으로 정책과정 및 예산과정이론에 수용됨. 균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의제목록, 정책독점, 정책위계제, 제한적 합리성 등이 활용되고, 예산의 단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정책 독점의 붕괴, 대중매체의 관심, 정책이미지, 정책투입활동 등이 활용됨.
- ④ 정책결정을 소수의 정책결정자들만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닫힌 시스템이자 구조인 정책독점 상황에서는 단일의 정책이미지가 폭넓게 지지를 받아 지속적인 안정이 유지되고 점증적 변화만 나타남. 그러나 정책이미지의 변화로 인해 대중매체·여론에 의해 어떤 이슈에 대한 비판적 관심이 증대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기존의 이해관계자 간의 권력 균형이 깨지며 정책독점이 붕괴되어 열린 시스템으로 전환됨. 정책독점이 붕괴되면 정책이슈는 정책위계체계로부터 거시정치체계로 이동하여 급격한 정책변화가 나타나 오랫동안 지속되던 정책이나 예산에 단절이 발생함.
- ⑤ 정책체계에서 외부로부터의 요구나 정보가 부정(負)으로 환류(negative feedback)가 되면 정책독점이 유지되고 위위정책체계인 정책공동체 내부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정적(正)인 환류(positive feedback)가 이루어지면 정책독점이 붕괴되어 정책이슈가 거시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슈네트워크로 이동되어 정책 또는 예산의 변동이 발생.
- ⑥ 한계 : 사후적 분석으로는 적절하나 단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므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4.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 ①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거래 전에 필요한 협상,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물론 계약이 준수되는가를 감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인 거래비용을 중심개념으로 예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예산은 계약의 일종이며, 예산의사결정은 거래(transaction)를 통해 이루어지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현재의 예산과정, 예산제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설명변수이고, 예산과정과 제도를 개혁 할 때 고려해야하는 변수라고 봄.
- ② 신제도경제학에 바탕을 둔 거래비용이론은 고전경제학의 완전한 정보와 마찰 없는 거래라는 가정을 완화하여 제한되고 비용이 드는 정보와 거래비용의 존재라는 가정으로 재구성됨. 또한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성과 이기주의 가정을 완화하여 인간의 인지적 한계나 정보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제한된

합리성의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거래비용의 발생 근원을 경제주체의 제한적 합리성에서 찾음. 즉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의 예측력에 한계를 가져오고 이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됨.

5. 구조결정론(Structural Theory)

- ① 공공재 공급자인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이 정부의 세출과 공공정책을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 즉 정부 예산의 크기와 구성을 주로 환경적 영향의 소산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서비스 공급의 양과 수준을 다양한 경제적 변수, 인구학적 변수, 그리고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정치 변수들에 의해 결정됨을 가정.
- ② 예산을 결정하는 이론으로서 명시적으로 구조결정론을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경제학을 배경으로 한 많은 경험적 연구는 암묵적으로 이 이론을 가정하고 있음. 경제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발한다는 경험적 연구(와그너의 법칙)들과 민주주의가 재정규모와 재정의 구성요소를 결정한다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이 이론을 전제로 한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음.

6. 모호성 모형(Ambiguity model) - 밀러(G. J. Miller) 1991. * 정책결정의 쓰레기통모형에 해당.

(1) 의의

모호성이 조직을 지배하므로 조직의 예산결정이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또는 절차, 의례, 상징(symbol) 등을 이용하여 결정이 바람직한 목표에 기여하는 것처럼 가장한다고 봄. 예산결정이란 해결하여야 할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결정에 참여하여야 할 참여자, 결정의 기회 등 결정의 요소가 우연히 서로 잘 조화되어 합해질 때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 대부분의 경우 예산결정이란 결정 결과에 의미를 부여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따라서 이 모형에 의한 예산결정은 총체주의나 점증주의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범주에 들어가지 못함.

모형	기술(전략)	근거 이론	조직의 체제	결정 유형	이념	합리성
총체주의	분석	경제이론	폐쇄 체제	합리적	능률성	경제적 합리성
점증주의	협상·타협	집단이론	비교적 분권 체제	점증적	형평	정치적 합리성
모호성모형	과정·규칙설계	상징주의	느슨하게 연결된 체제	회고적	질서	비합리성

(2) 모호성(총체주의나 점증주의에서 말하는 예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됨)

- ① **의향(목표)의 모호성**: 조직이 일관된 목표나 잘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채택하거나 혹은 몇 개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중 비교적 훌륭한 대안을 택할 수도 없음.
- ② **이해의 모호성**: 조직은 매년 상이한 결정 상황에 직면하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조직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모름.
- ③ **역사의 모호성**: 조직에서 과거의 경험은 결정에 참고가 되므로 중요하지만 해석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왜곡되기도 함.
- ④ **조직의 모호성**: 조직구성원은 그때그때의 결정에 보이는 관심이 다르며 각각의 결정에 투여 하는 관심도 다르므로 결정자들이 결정에 참여하는 양태가 불확실하고 계속 변함.

(3) 모호성 모형의 예산결정과정

- ① 목표의 모호성, 수단의 부재, 조직 외부에서 심각한 사건이나 계기가 주어지면 그 때야야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며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결정자도 있음.
- ②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에 따라 문제를 정의하며 해결책이 없으면 결정은 계속 지연됨.
- ③ 조직 및 결정자의 선호나 가치가 불분명하며 조직구성원 간 공통적 가치도 없으므로 해결책 채택에 분석을 이용하지 않음.
- ④ 문제, 해결책, 결정시간, 결정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동시적으로 존재할 때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이는 매우 드물고 대체로 결정의 마감 시간이 도래하였을 때 법령이나 서식에 맞추거나 또는 다수결이나 발원권이 강한 인사에 의해서 날치기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짐. 즉, 대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가끔 예외적으로 결정에 도달함.

(4) 모호성 모형의 특징

- ①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 서로 정보를 주고 업무 협조를 하지만 각 조직별로 자신의 업무와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에서는 단위조직마다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결정은 사실상 곤란.
- ② **은유와 해석 강조**: 예산결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결정기회 등 결정 요소가 서로 우연히 결합되어야 이뤄지지만. 이러한 우연한 기회는 결정자들이 결정 요소들의 상호 작용이나 결정 기회를 임의로 해석함으로써 움. 결정자들이 특정 시점의 사건을 해석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구조를 강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은유에 기초해서 결정이 이루어짐.
- ③ **제도과 절차의 강조**: 제도와 절차들은 서로 독립적인 조직 및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을 해석 하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이들에게 동일한 가치와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5) 한계

- ① 행정조직과 같이 계층제가 잘 발달하고 상하 관계가 잘 규정된 조직에서는 모호성 정도가 미약하므로 적용 곤란.
- ② 모호성 모형에서는 결정의 우연성과 결정의 시기를 강조하는데 우연성과 시기에 대한 설명은 매우 주관적이고 사후적임.

0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행정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CT기술의 발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운영된다.
- ② 대규모 정보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③ 정보 및 분석기술의 발달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촉진될 수 있다.
- ④ 정보의 공개와 유통으로 간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시민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⑤ 행정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을 위한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가 발달한다.

해설

- ④ (×) 4차 산업혁명으로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은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소규모 데이터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형성된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 분산성, 투명성, 보안성(시스템 안정성) 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보안 분야에서 디지털 계약, 공공기록(public record), 전자주민증, 전자시민권(e-residency), 전자투표 등을 실현하고 있다. 특별히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의 경우는 선거 보안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선거 유권자(참여자) 모두가 감시·관리하면서도 효율성, 익명성, 안정성까지 모두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유권자는 스마트폰 클릭 한번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의 장벽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재외국민 투표나 부재자투표도 사라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투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곧 **일상 속에서 디지털크리시의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정책에 대해 수시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투표 이력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으며, 재검표도 매우 쉽기 때문에 선거 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 ⑤ (○)
- **플랫폼(platform)** :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을 틀 또는 장(場)을 제공하고, 이들 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나 매개체. 플랫폼 사용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플랫폼 사용자가 많을수록 이익·가치가 증대됨(네트워크 효과).
 - **플랫폼 정부** : 정부가 기업·국민 등 고객·이해관계자에게 **'참여형 오픈 플랫폼(participative open platform)'**을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지원하는 정부의 기능·역할

답 ④

4차산업혁명

1. 의의

- ①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이버물리시스템(CPS ; Cyber-Physical Systems) 등 핵심기술이 상용화에 의한 '초연결형·초지능형 자동화시대'로의 사회변혁
 - ② 클라우스 슈바브(K. Schwab)가 2016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
 - ③ 3차 산업혁명(지식·정보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가상적·생물학적 영역의 융합을 통해 사이버 물리시스템 구축.
- **3차 산업혁명과의 차이** : 3차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기술발전의 속도와 범위, 시스템적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반적인 문화 혁명.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의 활용을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생산체제 도입을 의미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 가치의 생산을 의미하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집된 방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빅데이터 분석)하고, 새로운 패턴을 구축하는 인공지능의 발달을 핵심으로 함.

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혁신기제	동력혁명	분업화된 자동화 혁명(대량생산)	지식·정보 혁명	초연결성·초지능성·초예측성 혁명
특성	offline 혁명(인간의 신체능력 증강)		online 혁명	O2O(online 2 offline), CPS(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기술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모바일, 융합현실, 5G 통신, 로봇공학, 3D프린팅
정부			정부 1.0~3.0	정부 4.0

-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세계(현실)와 가상세계의 융합(O2O : online 2 offline). 그 동안 산업혁명이 물리적 공간(offline)과 사이버 공간(online)으로 구분되어 발전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두 공간과 시스템이 결합해 불연속성을 극복. 예)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를 이용한 mobile healthcare. 융합현실(Mixed Reality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 Computer Interface) 등.
- **FAST Government** :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미래정부 방향으로 수평적이고(flatter), 기민하며(agile), 간결하고(streamlined), 기술역량이 있는(tech-enabled) 정부.

2. 특징

- ①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 사물인터넷(IoT)의 진화와 만물의 디지털화에 따라 사람과 사물, 공간, 시스템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 초연결되어 상호의존도가 증폭됨.
- ② **초지능성(hyper-intelligence, super intelligence)** : 초연결성에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하여 인간생활의 패턴 파악. 인간과 생물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인간 수준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지능을 갖게 됨(예 자율주행차). 빅데이터와 정보가 클라우드와의 접촉을 통해 하드웨어 자체가 스스로 분석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디지털화된 물리적 세계의 객체들이 초지능성을 갖게 됨.
- ③ **초예측성** : 초연결성·초지능성을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통해 인간 행동을 예측. 딥러닝과 같은 첨단 AI는 스스로 빅데이터의 특징량을 추출해 의미 있는 판단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임
- ④ 기타 : **초신뢰혁명**(예 블록체인, 암호화폐), **초생명혁명**(예 바이오 및 나노 테크놀로지)

06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③ 육군 소장과 강원도 소방정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가 있다.
- ④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50만원이다.
- 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경기도의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해설

① (×)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윤리의 내용(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율)

법적 타율적 규범	헌법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 1항). * 충성의 의무를 헌법상 의무(헌법에 규정된 의무 x)로 분류하기도 함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 ② 복종, ③ 친절공경, ④ 비밀엄수, ⑤ 청렴, ⑥ 품위유지, ⑦ 종교중립, ⑧ 선서의무, ⑨ 외국정부의 영예 등 규제, ⑩ 직장이탈 금지, ⑪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⑫ 정치운동 금지, ⑬ 집단행위 금지
	공직자윤리법	① 이해충돌방지 의무,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인도,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3년) 및 행위제한, 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부패행위신고(내부고발)의무 및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②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5년), ③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④ 공직자의 청렴의무 * 국민감사청구, 부패유발 요인 검토, 공무원행동강령의 근거, 검찰에의 고발과 재정신청 등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①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② 직무수행 관련 공평무사한 처신 및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③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와 부정청탁의 신고, ④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수수금지품등의 신고, 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⑥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기타 개별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상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고위공직자의 병역사상 신고·공개) ②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공무원범죄를 통한 불법수의 추적·환수) ③ 공직선거법(선거범죄자 임용제한)
행정적 자율적 규범	추상적 규범	공무원헌장(2016. 대통령령. 기존 공무원윤리헌장을 대체)
	구체적 규범	공무원행동강령(2005. 대통령령)

② (×)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이하 각호 생략)
-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이하 각호 생략)

③ (×) 군인의 경우 중장(☆☆☆) 이상이 재산공개 의무자. 소장(☆☆), 준장(☆)은 재산공개 의무자가 아님

④ (×)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구 분	강의 1시간 또는 기고 1건 당 상한액	사례금 총액한도(1시간 초과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장·임직원	40만원	60만원(=1시간 상한액의 150% 초과 불가)
각급학교 장·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임직원	100만원	제한 없음

⑤ (○) ■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자

구분	재산등록의무자	재산공개의무자
정무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별정직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 시행령은 회계·조세·규제(인허가)·감사·수사 등 관련부처 5~7급 공무원까지 추가. 회계·조세·규제(인허가)·감사·수사 등 관련 부처의 5급~7급 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최고 직무등급 고위공무원단 소속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에 소속 포함) 지방 국제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특정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과 직무등급 6등급 이상)과 4급 이상의 국가 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2급이상)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 학장 포함)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감 총경(자치경찰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시행령은 경사 이상)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시행령은 소방장 이상)	외무공무원(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와 가 등급 고위공무 원단)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 소방감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공 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 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협중앙회·수협중앙 회의 회장·상임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회장·상 임감사
공직유관 단체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관련기출]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경찰승진
① 준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②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③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④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답 ①

[관련기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경찰승진
① 퇴직 후 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② 취업을 인정하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반 시 확인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③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취업 불가 또는 취업이 허용되는 민간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답 ④

[관련기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9 경찰승진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이해충돌 방지 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①

0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 공공기관심의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결정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지표로서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혁신과 소통 등이 포함된다.

해설

- (×) 공공기관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위원회이다. 공공기관의 지정·지정해제, 기관신설·폐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요구하거나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답 ②

08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선택론은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 후기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 비교행정 연구모형을 제시한 리그스(Riggs)의 연구는 행정 현상을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생태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 ④ 신제도론은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⑤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의 문제와 행정의 가치문제를 중시한다.

해설

- ① (○)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외부효과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가 보유하는 점, 즉 정부는 경제적 규제, 교육·사회간접자본·환경보전·사회복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 경쟁시장의 논리는 그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② (○) 1960년대말 격동기 미국에서 다양한 현대 사회문제 발생했고 행태주의는 지배적·가치중립적 연구를 중시했으므로 처방성이 결여되어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보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1960년대 말 후기행태주의는 사회과학자의 연구문제는 현실의 사회개혁과 관련되고, 시기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며 학계의 연구성과는 현실정책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치평가적 정책연구와 관학협동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하였다. 후기행태주의는 행태주의의 폐기가 아닌 과학적 분석법을 수용하며 행태주의의 단점(현실적합성 결여)을 극복하려 했고, 과학적 방법의 배제가 아닌 현실에의 적용을 강조하였다. 후기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가치배제·가치중립)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었고, 과학적 연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통계학과 컴퓨터 분석 등 계량적 분석방법에 뛰어난 능력을 급박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 • F. W. Riggs의 접근방법의 분류 - 실증적·경험적 접근, 일반법칙적 접근, 생태론적 접근 중시

연구방법	규범적 접근	바람직한 행정상태의 설정·연구	⇒	실증적·경험적 접근	있는 그대로의 행정현실을 연구
연구범위	개별사례적 접근	특정국가의 테두리 내에서만 연구	⇒	일반 법칙적 접근	여러 나라에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 연구
생태적 요인 고려	비생태론적 접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체제론	⇒	생태론적 접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개방체제론

- ④ (○) 신제도론은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이라는 동태적 관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또는 행정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좀 더 종합적·분석적 연구에 기여했다.
 ⑤ (×) 체제론은 지나치게 거시적 분석이어서 체제의 전체적 국면은 잘 설명하나, 체제의 구체적 운영이나 행태적 측면은 설명하기 곤란하다. 미시적·행태적 측면을 경시하여 행정현상에서 특수한 인물의 성격·개성·리더십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이를 과소평가하기 쉬우며, 권력·의사전달·정책결정 등의 문제나 행정의 가치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

답 ⑤

[관련기출] 행정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승진

- ① 생태론은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중범위이론에 자극을 주었다.
 ② 체제론은 행정현상에서 중요한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 등의 문제나 행정의 가치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③ 공공선택론은 관할 중첩을 타파하여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장한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정부기관을 배제하지 않고 계층제를 포함하여 시장과 네트워크를 연계·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답 ③

09 광역행정의 방식 중에서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 사무위탁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조합 ㉣ 연합 ㉤ 합병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 ㉠ (×) **사무위탁**: 계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관 설립은 없다.
 ㉡ (×) **행정협의회**: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협의기관으로 법인격이 없다.
 ㉢ (○) **지방자치단체조합**: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있다.
 ㉣ (△) **연합(federation)**: 복수의 자치단체가 기존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단체의 상부조직인 연합단체(federation)를 새로 신설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전담 처리하게 하는 방식. 연합체가 의결권·과세권 등 각종 권한과 집행권을 가지고 스스로 사업주체가 되므로 서비스 혜택과 조세부담이 일치하며 공동처리방식의 한계(협력의 취약성)를 극복. 연합방식의 유형으로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복합사무조합, 도시공동체, 광역의회등을 든다.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적 성격을 지니는 연합단체 구성. 예) 캐나다의 토론토 도시연합(광역토론토)과 위니페고 도시연합, 미국 마이애미 도시연합, 일본의 동경·오사카 도시연합 등. 우리나라는 사무 중복과 지방행정체계의 복잡화로 인해 인정 안 함.
복합 사무조합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가지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법인인 조합을 설치하는 방식.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복합사무조합방식이 가능.
도시 공동체	대도시권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시들이 광역적 도시계획 실시, 공동시설 정비 등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적 자치단체나 행정단위를 구성하는 방식.
광역의회	관련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대표로서 광역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광역적 행정사항을 토의하여 의결하는 제도(연합방식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음). 예) 워싱턴 대도시권정부의회

지방자치단체연합체나 복합사무조합방식의 경우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이 설립된다.

- ㉤ (○) **합병(coalition)**: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가 신설되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소멸되는 방식.

* **정답 여부**: 확실하게 ㉢㉣은 문제가 제시한 내용에 합치되므로 ㉣을 답으로 보지만 법인격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며, 연합방식도 새로운 법인격을 지닌 기관이 설립될 수 있음을 주의. 아래 추가한 관련 기출문제를 보면 연합체 방식을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는 지문이 있으며, 연합방식인 복합사무조합을 묻는 문제도 있음.

답 ④

[관련기출] 광역행정의 접근 중 '연합제'를 설명한 것은?	2004 국회8급
① 수개의 군소정당을 통폐합하여 단일정부화한다. ② 중심도시에 도시화된 인접 지역을 편입한다. ③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로 집행력이 없다. 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각각의 법인격을 유지한 채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한다.	

답 ⑤

[관련기출] 광역행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9 지방7급
① 흡수통합은 자치단체를 몇 개 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②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③ 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④ 자치단체 간 계약은 한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①

[관련기출] 광역행정의 방식 중 연합 방식인 것은?	2013 서울7급(지방자치론)
① 복합사무조합 ② 일부사무조합 ③ 사무위탁 ④ 공동기관 ⑤ 연합회의	

답 ①

10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와 그 사례의 연결로 옳은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 책임운영기관 - 국립의료원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근로복지공단 ㉢ 정부기업 - 우정사업본부	㉣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관광공사 ㉤ 시장형 공기업 - 한국철도공사
---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 ㉠ (△) 국립의료원의 현재 명칭은 **국립중앙의료원**이며 정부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체로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2000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의료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 2010년 4월 정부조직에서 독립시켜 법인화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칭.
 - 2010년 7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 지정.
- * 참고로 공공기관지정현황은 <http://www.alio.go.kr/alioPresent.do> 참조
- ㉣ (×) 한국관광공사는 종래 준시장형 공기업이었지만 2018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됨.
- ㉤ (×) 근로복지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 (×) 한국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
- ㉢ (○)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기업에 해당함.
- ※ **정답 여부** : 과거 국립의료원이 책임운영기관이었다고 보고 출제했다면 ㉠이 답이 되지만, 그런 식의 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 생각으로는 출제자가 기관 성격 변경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제한 오류로 보인다. 정답 논란의 여지는 있다.

답 ①

☞ 공공기관 현황(2021년 현재 350개)

공기업 (36개)	시장형 (16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강원랜드
	준시장형 (20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KPS, 주식회사 에스알
준정부기관 (96개)	기금관리형 (13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근로복지공단
	위탁집행형 (83개)	한국관광공사 , 한국재정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독립기념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산업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아시아문화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타 공공기관 (209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특허정보원, 서울대학교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한국장기금조직원, 예술의 전당, 국악방송,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 * 2018년 강원랜드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됨.
- * 2019년 인천항만공사가 준시장형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됨.

☞ 책임운영기관의 유형(2021. 4. 현재 53개)

기관 지위	사무성격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주1)} (13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외의 소속책임운영기관(40개)	
				일반회계 (37개)	특별회계 ^{주2)}
소속책임 운영기관	조사 연구 형	조사 및 품질 관리형		국립중자원,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기상청, 항공교통본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경인·동북·호남·동남·충청 지방통계청	화학물질안전원
		연구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계개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훈련형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통일교육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문화형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궁능유적본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료형		국립 나주·부곡·춘천·공주·마산·목포 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경찰병원		
	시설관리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해양경찰청비행, 국방전사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타 유형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제상담센터	
중앙책임 운영기관	기타 유형		특허청		

* 주1)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기업특별회계이며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되며 정부기업으로 간주.
* 주2)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이며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 안 됨.

11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서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는 일선관료들의 집행성과에 대한 기대 중 비현실적이거나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 ② 일선관료는 일반 시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 ③ 육체적·신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는 '잠재적 공격자'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집행현장의 의사결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이 있다.
- ④ 일선관료는 시간과 정보·기술적인 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 ⑤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정책대상 집단과의 갈등이나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것이다.

해설

- ① (○) 일선관료는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는 '이상'과 개별사례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 간 괴리 때문에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에 직면하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많다.
- ② (○)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는 정책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시민과 직접 대면접촉하고 상호작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보유한 공무원이다. 예) 교사,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사, 민원창구직원, 판사 등
- ③ (○)
 - 일선관료의 적응 메커니즘(coping mechanisms)의 개발 : 단순화(Simplifications)와 정형화(Routines)
 - 일선관료들은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여 직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응 메커니즘을 개발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단순화와 정형화이다. 단순화란 복잡한 환경을 자신이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환경으로 구조화시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형화란 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을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유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순화와 정형화라는 적응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기 위해 일선관료들은 재빨리 결정을 내림으로써(가장 쉬운 지름길을 선택) 시간을 절약하고, 정책대상 집단과의 갈등,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피하고자 한다. 또한 문제 상황을 미리 구조화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한다.
 - ② 육체적·신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잠재적 공격자(Potential Assailants)'의 특징을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집행현장의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회피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줄이기도 한다.
 - ③ 모호하고 상반된 역할기대에 적응하기 위해 역할기대와 고객집단을 재정의한다. 일선관료들이 달성해야 할 정책성과나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역할을 재정의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과 고객집단에 대한 재정의는 일선관료의 책임전가로 나타날 수 있다.
- ④ (×) 일선관료는 시간과 정보·기술적인 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답 ④

[관련기출]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9급

-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답 ③

12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것은?

- 톰슨(Thompson)의 이론에 따르면, (㉠)의 경우 단위부서들 사이의 과업은 관련성이 거의 없으며 각 부서는 조직의 공동목표에 독립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이러한 (㉠)은 주로 중개형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에서 나타나는데 부서들이 과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단위작업간의 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
- (㉠)이 있는 경우 부서간 의사소통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리자들은 부서간 조정을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규칙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 ①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 ②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③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④ 과업의 상호의존성(task interdependence)
 ⑤ 공동의 상호의존성(common interdependence)

해설

톰슨의 기술 유형 분류 중 중개형 기술에서의 상호의존성은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이다. 상호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갈등의 정도가 낮고 조정방식은 표준화에 의한다.

답 ③

[관련기출] 톰슨(J. Thompson)의 기술모형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07 경기9급

- ①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을 길게 연결된 기술, 중개적 기술, 집약적 기술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② 집약적 기술(intensive technology)을 사용하는 부서의 의존관계는 교호적 상호작용이다.
 ③ 길게 연결된 기술(long-linked technology)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화가 가능하고, 순차적 의존관계를 지니게 된다.
 ④ 중개적 기술(mediating technology)은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로서 종합병원과 같은 곳에서 사용한다.

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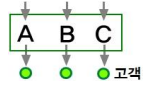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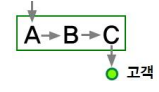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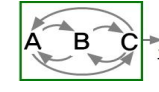
[관련기출] '길게 연결된 기술(long linked technology)'이 근거를 두는 상호의존관계(interdependence)는?

2002 입법고시

- ① 중앙집중적(pooled) 상호의존 ② 호혜적(reciprocal) 상호의존 ③ 상대적(relative) 상호의존
 ④ 순차적(sequential) 상호의존 ⑤ 계열적(serial) 상호의존

답 ④

☞ 톰슨(J. Thompson)의 기술유형론 - 기술의 상호의존성

구 분	중개적 기술 (mediating technology)	길게 연결된 기술(연속형 기술) (long-linked technology)	집약적 기술 (intensive technology)
의 미	상호의존상태에 있거나 서로 의존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연결하는 기술. 단위부서 간 과업 관련성은 없음.	여러 활동이 순차적 의존관계에 있을 때 사용하는 기술(A부서 산출물이 B부서 활동의 투입이 됨)	특정 대상물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모은 다양한 기술의 집합체. 개별 고객의 성격·상태에 따라 다르게 배합되는 기술.
	일상적 기술 ←		→ 비일상적 기술
예	은행(예금자-대출자 간 연결) 직업소개소(구직자-구인자 연결) 공인중개사(구매자-매도자 연결)	대량생산조직 - 연속적 공정(화학공장), 컨베이어 시스템, 조립라인	맞춤기술·주문기술(종합병원에서의 치료, 건축업)
상호 의존성	집합적(공동적·집단적; pooled)  상호의존성 가장 낮음 일방향 집중형(예 은행직원의 자취상품 판매업무) - 상호독립적	순차적·연속적(sequential)  상호의존성 높음 연쇄고리형(선후관계로 연결)	교호적·호혜적(reciprocal)  상호의존성 가장 높음 쌍방향 상호의존형(모든 업무담당자가 협력해 생산)
갈등	낮음	중간	높음
조정방법	표준화	계획	상호적응(표준화 곤란)
조정곤란도	조정 용이	중간	조정 곤란(갈등 수반)
생산비용	낮음	중간	높음
복잡성	낮음	중간	높음
공식성	높음	중간	낮음
추가적 방법	전담직위로 참모 설치	위원회 설치	Project Team, Task Force

☞ 과업의 상호의존성과 갈등

- ① 독자적으로 과업 수행시(상호의존성이 낮으면) 갈등 가능성은 낮음.
서로 연계·의존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수록 갈등 가능성 증가.
- ② 의존관계 중 모순적 의존관계시 갈등 발생, 긍정적 의존관계시 갈등 발생 약함.
한 부서가 다른 부서에 대하여 일방적 업무의존관계인 경우이면 갈등 가능성은 매우 높음.
- ③ 집합적 상호의존성(일방향 집중형)에서는 부서 간 교류가 가장 불필요하므로 갈등 소지가 낮음.
순차적 상호의존성(연쇄고리형)이나 교호적 상호의존성(쌍방향 의존형)은 다른 부서의 투입이나 산출에 영향을 받으므로 갈등 가능성이 높음.

집합적[공유적](pooled) 상호의존성 (일방향 집중형)	두 집단이 동일한 모(母)조직에 속해 있으며, 모조직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받는 경우 상호간 집적적 상호의존성은 약하므로 갈등 가능성은 약함. 예 은행의 각 지점 간 관계	갈등 가능성 낮음
순차적[서열적](sequential) 상호의존성 (연쇄고리형)	한 집단의 활동이 다른 집단에 앞서는 경우, 후자의 업무수행에 전자가 영향을 미치므로 업무순서 상 상호의존적인 집단 간 갈등 발생 예 conveyer system	갈등 가능성 높음
교호적[호혜적](reciprocal) 상호의존성 (쌍방향 의존형)	다수 집단이 상호작용시 상호의존성이 가장 높음. 모든 집단의 활동은 다른 집단의 활동 의존하면서 동시에 다른 집단의 활동의 전제가 됨.	

13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수행자가 복잡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수행방식을 법규나 지침으로 경직화시키지 않는다.
- ② 전문성이 강한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동질성이 높다.
- ③ 수평적 분화의 정도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낮다.
- ④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본래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 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력업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협력업체들은 하위조직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조직들이다.

해설

- ① (○)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인 공식성이 낮다. 복잡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칙화, 표준화가 낮고 상황적응적이다.
- ② (×)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조직되는 것은 전통적인 기능별 조직이다. 애드호크라시는 대부분 기능이 통합되고 경계가 타파되며 일의 흐름에 따라 편제된 조직이다.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구성된 후 업무가 끝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 ③ (○) 조직구조변수로서 복잡성은 낮지만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낮고(탈계층제, 저층구조, 수평적 구조) 수평적 분화의 정도는 높다고 본다. 단 수평적 분화의 기준은 기능별 동질성에 따른 분업체계가 아니라 일의 흐름에 관련된 상호관련성으로 파악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관련 전문가간 수평적 연계에 의한 대응으로 파악한다.
- ⑤ (○) 네트워크조직은 한 조직 내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자체기능은 전략·계획·통제 등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회계·제조·포장·유통 등 여타 부수기능들은 외부기관과의 계약관계(outsourcing)를 통하여 연계·수행하는 구조이다. 각 조직의 독립성이 높으며, 기존 관료제와 달리 수직적 계층관계를 따지 않고 느슨한 연결을 갖는다.

답 ②

[관련기출] 애드호크라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011 군무원9급

- 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조직된다.
- ② 관료제 조직에 비하면 계층의 수가 적은 낮은 계층성을 보인다.
- ③ 칼리지(collegia) 구조 형태를 띤다.
- ④ 애드호크라시 조직형태로는 프로젝트팀, 매트릭스조직, 태스크포스, 망상구조(네트워크 구조) 등이 있다.

답 ①

[관련기출] 탈관료제 조직모형인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2005 국가7급

- ① 수평적 역할 분화가 잘 되어 있다.
- ② 조직 환경이 복잡하고 동태적일수록 잘 기능할 수 있다.
- ③ 구성원 간 유기적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
- ④ 공식적인 법규나 절차에 의한 구성원의 행동조율이 곤란하다.

답 ③

[관련기출] 다음 보기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조직은 어떤 형태의 조직인가 ?

2007 강원9급

- ㉠ 조직이 수평적으로 분화된 정도가 높다.
- ㉡ 조직의 직무가 공식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가 낮고, 분권화의 정도가 높다.
- ㉢ 기능별, 목적별 집단과 프로젝트팀이 공존한다.
- ㉣ 통합조정을 위한 횡적 의사소통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 ① 기계적 관료제
- ② 전문적 관료제
- ③ 사업부제조직
- ④ 애드호크라시(Adhocracy)

답 ④

14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 ③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자신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립된 주민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해설

- ① (○) 현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다. 2022년부터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은 규칙에 대한 제정·개폐청구도 가능하며,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할 수 있도록 직접발안방식을 도입한다(주민조례 발안법이 별도 제정될 예정)
- ②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 ③ (○)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②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청구권자)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주민소송을 규정. 주민소송은 민중소송·공익소송으로서 자신의 법익 침해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소익을 요하지 않음).
- 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반영해야 한다×)**
- d)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립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답 ⑤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법령 규정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립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적 근거 • 의무적 시행 • 주민참여예산기구 • 의견수렴 및 의견서 예산안 첨부(필요적) • 행안부장관이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임의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반영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해야 한다 ×)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통령령 ×)로 정한다.	• 참여방법 제시(조례로도 정할 수 있음) • 수립된 주민 의견 반영(임의적) • 행안부장관의 제도운영 평가는 매년 실시 가능 • 범위·의견수렴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

15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의제설정모형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회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고, 노력하도록 자극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 ①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 ② 내부접근형 정책의제 설정 ③ 외부주도형 정책의제 설정
④ 군히기형 정책의제 설정 ⑤ 대중인식형 정책의제 설정

해설

새마을 운동은 국가 주도, 행정PR을 통한 공중의제화를 특징으로 하는 동원형 의제설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답 ①

[관련기출] 다음 정책의제설정 모형 중 외부주도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2004 국회8급

- ① 새마을운동, 가족계획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논쟁의 주도자는 국가이며 대중의 지지가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다. ④ 주도자들은 정책의 대중 확산이나 정책 경쟁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⑤ 허쉬먼(Hirschman)은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하였다.

해설

- ①②③ (×) 동원형에 대한 설명이다. 외부주도형은 논쟁의 주도자가 사회적 행위자들(국민)이며 대중의 지지가 높은 경우이다.
④ (×) 내부접근형에 대한 설명이다. 내부접근형은 논쟁의 주도자가 사회적 행위자들(권력을 지닌 특정집단)이며 대중의 지지가 낮은 경우이다.

답 ⑤

[관련기출] 1960~1970년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이나 새마을사업은 어떤 정책의제설정모형에 해당하는가?

2005 군무원

- ① 외부주도형 ② 동원형 ③ 내부접근형 ④ 군히기형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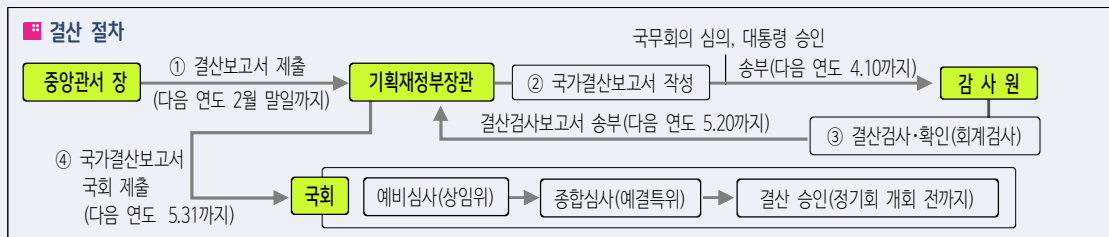
16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와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③ (○) **국가재정법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와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결산 절차



답 ④

[관련기출] 예산의 결정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국회8급

-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에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총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 ④ 감사원은 결산 확인이 끝나면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⑤ 국회는 제출된 결산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답 ③

17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 ㉠ 공무원이 반응해야 하는 대상을 고객과 유권자 집단으로 본다.
- ㉡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개인이익의 총합을 통해 시민 또는 고객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 ㉢ 행정재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 ㉣ 공익의 개념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 ㉤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은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와 사회봉사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 ㉠ (X) 공무원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Serve citizens, not customers). 공무원은 고객이라는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손님의 요구에 단순히 반응하기 보다는 시민 사이의 믿음·협동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직접적인 고객(구매력을 가진 자) 이외의 사람들(약자)에게도 봉사하므로 형평성에 대한 요청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 ㉡ (X) 정부책임의 범위는 단순히 시장지향적·성과지향적인 이윤 추구·달성이 아니라, 법률과 헌법, 공동체가치, 정치규범,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 이러한 다면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시민참여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공익은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본다(공익에 대한 담론 중시). 행정인은 공익에 대해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을 구축하여 개인적 선택에 의한 빠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공유할 수 있는 이해와 책임을 창조해야 한다. 관료는 시민들이 담론을 통해 공동가치를 표현하고 공익에 대한 집단적 의미로 발전시키는 공적 에너지의 창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익을 개인이익의 총합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이다.**
- ㉢ (O) 신공공관리론은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료에게 넓은 재량을 허용해야한다고 보지만, 신공공서비스론은 관료의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 ㉣ (O) ㉠번 해설 참조
- ㉤ (X) 관료의 동기유발 기제로서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 정신,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를 강조하고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의 실현 및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공직봉사동기)를 강조한다.**

답 ②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구분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과 인식의 토대	정치학 및 초기의 사회과학이론	경제이론 . 실증적 사회과학에 기초한 정교한 토의	민주주의 이론 . 실증주의·해석학·비판이론·포스트모더니즘을 포괄하는 다양한 접근
합리성모형과 행태모형	개괄적 합리성 행정인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 경제인 또는 자기이익에 기초한 의사결정자	전략적 합리성 - 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
공익에 대한 입장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이익(사익의 총합)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관료의 반응대상	고객(의뢰인)과 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노정기 (정치적으로 결정된 단일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행)	방향잡기 (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봉사 (시민과 지역공동체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 공유가치의 창출)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민간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네트워크 구축
책임에 대한 접근양식	계층제적·위계적 (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책임 짐)	시장지향적 (개인 이익의 총화는 시민 또는 고객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 창출)	책임의 다원성 (공무원은 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의 이익에 참여)
행정재량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 만 허용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료에게 넓은 재량 허용	재량은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
기대하는 조직구조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 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기본적 통제만을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 을 갖는 협동적 구조
관료의 동기유발기제	임금과 편익, 공무원보호(신분보장)	기업가 정신,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공익의 실현 및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관련기출]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 ②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 ③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답 ②

[관련기출] 덴하르트(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2 지방7급

- ㉠ 공무원의 반응대상을 시민보다 고객에 두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공유된 가치창출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보는 점에서 뉴거버넌스 이론과 유사하다.
- ㉡ 전략적 합리성보다 기술적·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과 유사하다.
- ㉢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 ㉣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의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 ㉤ 공무원의 동기유발수단을 보수와 편익, 기업가 정신이 아닌 사회봉사 및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에 두고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답 ④

[관련기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17 지방9급(하)

-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owing)이다.
- ③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이다.
- ④ 공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답 ②

18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이 정부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그(pay-go)'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다.
- ③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같은 법률 내의 조항 간 모순·충돌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는 체계심사는 표결을 통과한 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국회직 특성에 따른 출제로 헌법문제이다. 일반 행정학 문제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다.

①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페이그(Pay-go)' 법안은 의무(직접)지출 증가나 세입감소를 유발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는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제3항). 국회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 제1항). 즉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면 되고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위 지문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재원조달방안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옳다.

- ③ (○) **국회법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①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 •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법률안 체계·자구심사

- ① 체계(體系) 심사 :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유지, 자체조항 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
 ② 자구(字句) 심사 :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은 어디까지나 체계와 자구의 심사에 한하고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면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다.
 ⑤ (○)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답 ④

19 다음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공무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며 민간인은 지원할 수 없다.
 ② 개방형직위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직 및 별정직은 제외된다.
 ③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개방형직위 지정범위에 관해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 ① (○) 공무직위제도는 정부 부처 내·외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무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 개방형 직위는 일반직뿐 아니라 특정직·별정직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반영 공무직위는 경력직(일반직·특정직)에 한정된다.
 ③ (×) 중앙정부부처의 경우 소속장관은 개방형직위로 지정·변경·해제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해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공무직위의 경우는 지정범위만 협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방형직위 지정시 지정범위에 관한 협의절차는 없다.
 ④ (○)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로 되어 있으며,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가미된 형태이다.
 •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의 직위분류제적 요소** : ① 계급의 세분화(일반직의 9계급제), ② 일반직·연구직·지도직의 직군·직렬·직류 별 구분, ③ 전직시 전직시험, ④ 동일 직군·직렬 내 승진원칙, ⑤ 보수체계의 직무급 원칙, ⑥ 직렬·직류별 채용시험제도, ⑦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
 ⑤ (×) 개방형직위 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소 2년 이상. 단, 공무원이 아닌 자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시 최소 3년 이상.

- **개방형 직위 및 공무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3년
 2.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1년

답 ③

☞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와 공무직위제도 비교

구분	개방형 직위제도	공무직위제도
요건	전문성이나 효율적 정책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 임용(경력개방형은 공직외부)	효율적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한 적격자 임용 필요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 적격자 임용
지정기준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조정성(낮아야 함), 변화필요성	직무공통성, 정책통합성, 변화필요성
지정비율	① 고위공무원단 : 20% 범위 ② 과장급 : 20% 범위	① 고위공무원단 : 경력직 30% 범위 ② 과장급 : 경력직 20% 범위
지정협의	소속장관은 개방형직위로 지정·변경·해제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해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해야 함.	소속장관은 공무직위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 공무직위의 지정·변경·해제는 협의 필요 없음
선발시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필기·실기시험도 가능)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선발시험위원회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5인 이상) - 인사혁신처 소속 - 위원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인사혁신처장이 위촉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공무직위 선발심사위원회(5인 이상) - 소속장관 소속 - 심사위원의 1/2이상은 타 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 위원장은 위원 중 소속장관이 지명 가능
임용방법	경력경쟁채용 원칙. 경력직(임기제 제외)이던 자는 전보·승진·전직 방법 가능	경력경쟁채용, 전보, 승진, 전직
임용신분	임기제 원칙(임용시 경력직이면 경력직으로 임용 등 예외 있음)	·
임용기간	소속장관이 5년~2년의 범위 안에서 정함(원칙)	·
전보 제한	임용시 경력직은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음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음
지방공무원	광역자치단체는 1~5급, 기초자치단체는 2~5급 10% 범위	지정범위, 지정비율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함

20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의 경우, 정책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지지하지 않을 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 ②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리적 행위에 관한 권한들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자는 행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 ③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은 정책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집행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협상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와 협상을 하게 되고, 만약 정책집행자들이 정책결정자가 제시한 정책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응 또는 불집행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관료적 기업가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

해설

- ① (○) 고전적 기술가형에서 정책집행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집행자들이 그 정책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해서가 아니라 정책집행에 요구되는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문제해결의 실패로 인해 정치적 합의가 무너지면 계층체제인 명령체제에 의하여 정책결정자가 집행자를 강력하게 통제하던 체제 전체가 허물어지고 고전적 기술가형에서 전제로 했던 정책결정자가 정한 정책목표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지지가 어렵게되며 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 원자력 발전소건설의 경우 방사능 누출 가능성에 의한 안전문제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문제의 미해결 등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결국 일반시민, 언론기관, 정책결정자들 간에 합의가 무너지고, 정책결정자가 집행자를 강력하게 통제하던 체제 전체가 와해되는 경우.
- ⑤ (×)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이다.

■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구 분	정책결정자의 역할	정책집행자의 역할	정책실패 이유
고전적 기술관료형	구체적인 목표설정 집행자에게 기술적 권한만 위임	결정자의 목표를 지지(목표에 합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	• 집행자의 기술적 역량 부족
지시적 위임자형	구체적인 목표설정 집행자에게 행정적 권한도 위임	결정자의 목표를 지지(목표에 합의). 집행자 상호 간에 행정적 수단에 관하여 협상	• 집행자의 기술적 역량 부족 • 결정자의 모호한 지시 • 다수 집행기관의 참여 (수단의 선택에 의견 충돌)
협상자형	목표를 제시(단 목표에 대한 합의는 되지 않음). 집행자와 목표·수단에 관하여 협상	결정자와 목표·수단에 관하여 협상	• 집행자의 기술적 역량 부족 • 협상실패(집행자의 불만-타성·부집행) • 집행자의 집행 회피, 자의적인 자원 사용, 정책목표 왜곡
재량적 실험가형	추상적 목표를 지지.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해 목표·수단을 구체화하게 함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함(再정의).	• 집행자의 기술적 역량 부족 • 집행자의 기만·왜곡 • 결정자와 집행자의 책임회피 • 정책의 모호성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결정한 목표와 수단을 지지(집행자에게 권력 이전)	목표와 수단을 결정. 결정자에게 목표·수단을 받아들이도록 설득	• 집행자의 기술적 역량 부족 • 집행자의 기만·왜곡 • 결정자와 집행자의 책임회피 • 정책의 선매(매수; preemption)

답 ⑤

[관련기출]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찰승진

- 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통제하여 집행자가 결정된 정책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이다.
- ② '협상자형'은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과 차이점을 갖는다.
- ③ '재량적 실험가형'으로 정부가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특정한 질병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국립보건기구나 의과대학들에 의뢰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④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보·기술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정책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대부분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하는 유형이다.

답 ④

[관련기출]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경찰간부

- ①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하며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 ②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만, 정책집행자도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다.
- ③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④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

답 ③

21

우리나라 중앙예산부서의 재정관리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 ②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 ③ 예산 절감이나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 ④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① (O)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② (X) 사회기반시설사업(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은 주무관청이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O) • **예산성과금**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일반 국민도 가능)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증대된 수입)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O)

•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 ⑤ (O) • **국가재정법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언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2 혼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 ㉠ 혼돈이론은 안정된 운동상태를 보이는 계(系)가 어떻게 혼돈상태로 바뀌는가를 설명하고, 또 혼돈상태에서 숨겨진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 ㉡ 혼돈이론에 의하면, 혼돈은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화할 뿐 아니라 미세한 초기조건의 차이가 점차 증폭되어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 ㉢ 혼돈이론은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며, 이는 뉴턴(Newton)의 운동법칙을 계승한 것이다.
- ㉣ 혼돈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와 공진화(coevolution)이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해설

- ㉠ (○) 혼돈이론은 혼돈상태(chaos)를 연구하여 폭넓고 장기적인 변동의 경로와 양태를 찾아보려는 접근방법이다. 예측 불가능한 현상, 무질서하게 보이는 복잡한 현상의 배후에는 정연한 질서가 감추어져 있음이 밝혀지는데, 그 법칙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혼돈이론의 목적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으로 보이면서도 나름대로 질서와 규칙성을 지니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보이면서도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안정적이며 여러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물리학에서는 안정된 운동 상태를 보이는 계(系)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혼돈 상태로 바뀌는가를 설명함으로써 혼돈 현상 속에도 어떤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이론으로 정의한다.
- ㉡ (○) 초기조건에의 민감성,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 비평형체제에서는 비선형성과 편차증폭순환고리 과정이 융합되면 초기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증폭되어 체제에 더 큰 혼돈적 행태를 초래.
- ㉢ (×)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고 선형적이며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강조했다면, 카오스행정이론은 복수의 합리성과 모순을 허용하고 비선형적이고 비가역적인 생성적 관계, 혼돈과 무질서를 강조한다. 원인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으므로 변화가 불규칙하게 전개되고 그 결과의 예측이 곤란하다고 본다.
- ㉣ (○) •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자생적 학습능력, 체제의 구조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관련이 없이 스스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꾸려나가는 것. 한 시스템안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열거설기 얽혀 상호관계나 복잡한 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환경에 적응해 나감.
- 공진화(coevolution, 共進化) : 환경적응력이 높은 개체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진화가 아니라 각 개체들이 상호인과성을 갖고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함께 진화해 나가는 과정.

답 ③

2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 ㉠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 ㉡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다가 외부의 충격을 겪으면서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경로에서 다시 균형상태를 이루는 단절적 균형의 특성을 보인다.
- ㉢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규칙 또는 규범에 적절하게 순응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제도에 종속될 뿐이라고 본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해설

- ㉠ (×) • 역사적 신제도주의 : 제도의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 간 정책 차이를 강조(종단면적 차이점)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 또는 조직 간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어떻게 취하는가에 관심(횡단면적 유사점).
- ㉡ (○)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으로서 제도의 급격한 변화-외부의 충격과 단절적[결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역사적 우연성 : 제도는 환경변화에 점진적으로 적응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경로의존성에 의해 과거의 정책이 살아남아 지속되지만, 외적 충격에 의한 위기상황(경제위기나 군사적 충돌)이 닥치면 기존 제도의 균형상태가 종단되고 경로를 이탈하여 전혀 새로운 제도로 이행하며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올 때까지 제도의 균형상태가 유지된다.
- ㉢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인간이나 조직의 행위는 합리성·효율성보다 사회문화적 제도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존재함. 따라서 조직은 사회문화적 정당성 획득을 위해 사회문화적·제도적 환경과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적응을 지향한다고 보는 구조기능론적 접근을 취한다. 제도가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차원을 강조한 전통적인 사회학적 분석과 달리 제도적 영향의 인지적 차원을 강조한다. 제도가 인간행위의 인지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전략적 계산, 기본적 선호,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조직 차원에서 사회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당연시되는 조직 구조 및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㉔ (○) • 제도의 변화 원인에 대한 시각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제도의 변화 결과성(consequentiality) 논리	제도나 균형상태의 변화는 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개인이 경험하는 편익이 비용(특히, 거래비용)보다 커야 제도가 변화할 수 있음(비용·편익분석).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인지·상징흡수 적절성(appropriateness)의 논리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의 행동은 타산적 이익이나 도구적·전략적 인 것에 기인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이미 형성된 것에 기인한다고 인식하는 문화종속적·규범적 입장(문화라는 행동각본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을 가정). 다양성·변화·합리성보다는 동질성·안정 성·비합리성에 초점을 두므로 사회규범적 환경을 통한 정당성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제도는 변하지 않는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결절된[단절적] 균형, 외부적 충격 역사적 우연성	제도는 환경변화에 점진적으로 적응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경로의존성에 의해 과거의 정책이 살아남아 지속되지만, 외적 충격에 의한 위기상황(경제위기나 군사적 충돌)이 닥치면 기존 제도의 균형상태가 중단되고 경로를 이탈하여 전혀 새로운 제도로 이행하며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올 때까지 제도의 균형상태가 유지됨.

답 ④

[관련기출]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11 경찰간부

- ①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는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는 도태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의 선호체계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 ③ 신제도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제도 간의 관계에 관해 법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역사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중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 또는 조직 간 어떻게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취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답 ④

24 우리나라 예산집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 ㉑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 ㉒ 계속비는 사전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다.
- ㉓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㉔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

- ① ㉑, ㉒ ② ㉑, ㉓ ③ ㉑, ㉓, ㉔ ④ ㉒, ㉓, ㉔ ⑤ ㉑, ㉒, ㉓, ㉔

해설

- ㉑ (○) • **총괄예산(총액예산, lump-sum budget)** :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 구체적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큰 항목을 기준으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행정부의 재량적·포괄적 지출을 허용하는 예산제도(현대적 예산원칙인 행정부재량의 원칙과 관련됨)로서 신임예산과 지출통제예산이 총괄예산에 해당.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원 예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 지방교부세와 같은 포괄보조금, 총액계상 예산사업 등은 총괄예산의 성격을 띤다.
- ㉒ (×) 계속비는 국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㉓ (○) •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㉔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국내차입금, 해외차입금[차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차관, 국공채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금전급부의무)를 지고 연도를 경과하여 다음 연도 이후에 채무이행(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채무부담권만 부여)로 해당 예산에 반영되지 않지만, 금전급부 의무가 있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즉 차관 등 차입금이나 국채 발행은 현금 유입이 발생하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현금 유입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돈을 꾸는 것과 외상을 다는 것의 차이).

• **정답 여부** : 정답 가안은 ③을 답으로 하고 있으나 출제오류로 보인다. ㉔도 틀린 내용이므로 ②를 답으로 본다.

답 ②(정답 가안은 ③)

국채채무의 범위				
법령상 기준	국가 재정법	• 국가채무의 범위(91조 2항) ①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③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④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	•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91조 3항) ①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③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채 : 지방재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충금, 장기선수수익,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108조)		
국제 기준 (IMF)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됨			
	국가채무 =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순채무		* 지방정부순채무 = 지방정부 채무 -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국제 기준 (IMF)	* 국가재정법(제91조)상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작성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의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성 및 국제비교 등을 위해 2005년부터(1996년도까지 소급) 지방정부순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1)를 정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고, 2008 회계연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채무를 모두 포함한 국가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 작성.			
	•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보증 채무 :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확정채무 아님) ㉡ 4대 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 :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확정채무 아님) ㉢ 공기업 부채 :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정부가 채무부담자 아님) ㉣ 통화안정증권 :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정부가 채무부담자 아님)			

[관련기출] 예산집행의 신축성 보장 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11 국회8급
①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지방교부세 등 포괄보조금과 같은 형식이 있다. ② 정부조직 등에 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해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키는 이월제도가 있다. ③ 계속비제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답 ②

25 정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 ②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투입규제라고도 한다.
- ③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 ④ 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이다.
- ⑤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해설

- ① (×) 성과규제에 대한 설명이다.
 ② (○) 규제의 대상에 의한 분류 : 수단규제, 성과규제, 관리규제

구분	수단규제 - 투입규제	성과규제 - 산출규제	관리규제(regulatory management) - 과정규제
의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	수단·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는 피규제자가 만든 규제목표 달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
사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특정 유형의 환경통계기술 사용을 요구, 작업장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착용의 의무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제, 인체건강을 위해 개발된 신약에 허용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을 요구하는 것, 오염물질 배출량 통제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기초하여 피규제자가 체계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
평가	•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순응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 • 정책목표와 무관한 수단규제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규제준수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음.	•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정책목표 달성 가능. •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려움.	•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며, 피규제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음. • 성과 측정이 아니라 피규제자가 설계한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음.

③ ④ (○) **규제의 수행 주체를 기준으로 한 규제 유형 분류**

직접규제	㉠ 정부가 직접 피규제자인 민간의 행위와 의사결정을 통제(명령지시적 규제). ㉡ 장점 : 규제의 집행력 강함. ㉢ 단점 : 시장의 자율성 저해(민간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민간과 신뢰 구축의 훼손가능성), 규제의 전문성·효율성·적응성 약함
자율규제	㉠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집단이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규제 방식. 예 의사협회·약사협회의 구성원에 대한 규제. ㉡ 장점 : 전문성(피규제 집단의 전문적 지식 활용), 효율성(감시비용, 순응확보비용 등 규제비용 절감), 환경변화에의 적응성(규제 내용 및 절차의 유연성) 확보 ㉢ 단점 : 규제를 기업등 사경제주체에게 맡김으로써 과소규제현상 발생 가능,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외면하거나 규제도입을 지연 가능, 시장참여자중 영향력이 큰 소수의 이권단체나 기업에 의해서 규제기준 왜곡(참여자 차별화 수단으로 사용)
공동규제	㉠ 공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규제의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의 자율규제기관이 실제로 피규제자를 규제하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규제방식. 직접규제(명령지시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중간 상태. ㉡ 장점 : 자율규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시에 자율규제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며 순응도를 높임. 정부는 규제의 집행을 가능케 하는 법적 강제력과 준수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자율규제의 단점인 집행력의 한계를 보완. ㉢ 단점 :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면허권과 진입권을 가진 자율규제기관은 소속 회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비소속 회원들에게 진입장벽이 되거나 반경쟁적 관행의 원천이 될 수 있음. 외형적으로 공동규제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게 되면 자율규제가 가지는 자율성의 효과 및 장점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또 다른 변형된 명령지시적 방식의 규제를 만들어내는 데에 그칠 수 있음.

⑤ (○) **규제의 개입 범위 :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구분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특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전규제 예 주로 허가제·인가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사후규제 예 주로 신고제·등록제
법 규정 형식	~할 수 있다. ~이다. -허용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허용, 나머지는 금지)	~할 수 없다. ~가 아니다. -금지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금지, 나머지는 허용)
입증책임	피규제자가 규제법규 준수를 입증	규제기관이 규제법규 위반을 입증
효과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제약됨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보장됨

 ①